



보건복지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요양비 급여 특례 해제 안내

1.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92(2020.2.10.,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요양비 급여 특례 인정 기준 안내")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위기경보(경계 발령, '20.1.27)에 따라 우리 부에서는 '동일상병-동일처방'의 경우, 기존 수급자에게 처방전 없이 요양비 지급청구를 허용하는 등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의 요양비 급여에 대한 특례를 시행하였습니다.
- ※ 특례 인정 기준은 2020년 2월 10일 청구분부터 적용
3.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 하향 조정(심각 → 경계, '23.6.1.)**이 시행될 예정으로, 위기 단계 '경계' 조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23.7.1.부터 요양비 급여 특례 해제 조치**를 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계 하향시 조정계획(안) >

- 특례 기간('20.2.10.~'23.5.31.)에 해제 유예기간('23.6.1.~'23.6.30.)을 포함하여 건강보험공단이 직권 등록한 처방전의 처방 기간이 도래 또는 도과한 후부터 **요양비 청구 서류에 처방전을 첨부하도록 함** [변경사항: 처방전 미첨부 → 첨부]
- **복막관류액의 최대 처방 기간은 90일로 환원함** [변경사항: 180→90일]

붙임.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요양비 급여 특례 해제 계획 안내 1부. 끝.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대한의사협회, 한국소아당뇨인협회, 한국당뇨협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한국 척수장애인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한국호흡기장이인협회,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주무관 김유나 보건사무관 유강열 보험급여과장 정성훈 전결 2023. 5. 26.

협조자

시행 보험급여과-2534 (2023. 5. 26.) 접수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10동 / <http://www.mohw.go.kr>

전화번호 044-202-2735 팩스번호 044-202-3934 / una619@korea.kr / 대국민 공개

위험할 땐 119, 힘겨울 땐 129